

김포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2970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2022. 03. .
제출자 주민협치담당관

1. 제안이유

- 주민자치회 전면 전환 2기 출범에 따른 주민자치회 운영 내실화 및 자치 활성화 지원방안 보완

2. 주요내용

- 가. 위원 선정위원회 구성 일부개정(안 제9조)
- 나. 주민자치회장 및 부회장 연임 규정 정비(안 제11조)
- 다. 사무국 운영 관련 수당 및 실비 지급 근거 보완(안 제12조)
- 라. 주민자치회 지원방안 보완(안 제23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- 나. 관계법령 및 현행조례 : 붙임
- 다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- 라. 그 밖의 사항
 - 1) 입법예고
 - 가) 예고기간 : 2022. 2. 11. ~ 2. 22.(11일)
 - 나) 예고결과 : 의견없음
 - 2) 부서협의결과
 - 가) 규제사전심사 : 해당없음
 - 나) 성별영향분석 : 원안동의
 - 다) 부패영향평가 : 의견있음(검토결과 붙임)
 - 3) 중앙 및 도 관련부서
 - 가) 중앙부처 :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
 - 나) 경기도 : 자치행정과

김포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김포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읍·면·동별로”를 “주민자치회 내에”로, “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시장이 위촉한다”를 “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”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.

제11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자치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제12조제4항 중 “사무국장 및 자원봉사자에게 주민자치회 예산의 범위 내에서”를 “예산의 범위에서 사무국장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, 자원봉사자에게”로 한다.

제13조제1항 본문 중 “3명”을 “2명”으로 한다.

제20조제1항 중 “자치회장 등”을 “주민자치회”로 한다.

제23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역 읍·면·동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.

⑤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.

제26조제3항 중 “한다” 를 “하며, 시장은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협의 회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” 로 한다.

제27조제2항을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감사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선출 또는 임명된 감사의 정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제3조(임기에 관한 적용례) 제11조제6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선출된 자치회장과 부회장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

소관 실·과·소		주민협치담당관
입 안 자	실·과·소장 성명	주민협치담당관 주 이 자
	팀장 직위·성명	자치지원팀장 김 정 배
	담당자 성명·전화	지방행정주사 임 혜 주(☎2742)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위원 선정위원회) ① 주민자치회 위원 <u>의 공정한 선출을 위하여 읍·면·동별로</u> 위원 선정위원회(이하 “선정위원회”라 한다)를 두며, 다음 각 호에 따라 <u>7명 이내의 위원으로</u> 구성하여 시장이 위촉한다. 다만,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② 삭제</p> <p>③ ~ ⑤ (생략)</p>	<p>제9조(위원 선정위원회) ① ----- ----- <u>주</u> <u>민자치회 내에</u> ----- ----- ----- <u>7명의 위원으로</u> <u>구성한다.</u> <단서 삭제>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~ ⑤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1조(주민자치회의 장) ① ~ ⑤ (생략)</p> <p><신설></p>	<p>제11조(주민자치회의 장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<u>자치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</u> <u>으로 하고, 한 차례만 연임할 수</u> <u>있다.</u></p>
<p>제12조(사무국)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<u>자치회장은 사무국장 및 자원봉사자에게 주민자치회 예산의 범위내에서</u>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⑤ (생략)</p>	<p>제12조(사무국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<u>예산의 범위에서</u> 사무국장에게 <u>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</u>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, 자원봉사자에게 -----.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3조(감사) ① 주민자치회에는 <u>감사 3명</u> 이내로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. 다만, 전문성이 필요하</p>	<p>제13조(감사) ① ----- <u>2명</u> ----- -----.</p>

다고 판단되는 경우,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제20조(위원의 임기) ① 자치회장 등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연임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제23조(지방자치단체의 지원) ① ~ ③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제26조(기능 및 소집) ①·② (생략)

③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.

④ ~ ⑥ (생략)

제27조(감독) ① (생략)

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.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20조(위원의 임기) ① 주민자치회 -----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23조(지방자치단체의 지원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역 읍·면·동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.

⑤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.

제26조(기능 및 소집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---- 하며, 시장은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협의회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④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27조(감독) ① (현행과 같음)

<삭제>